

8. 建設業體診斷規則中改正令(案)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3-22號 1993. 2. 4

1. 개정취지

건설업자의 실질자본금이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거나 일반건설업체 및 특수건설업체의 도급한도액 결정을 위해 재무구조 평가업무를 위탁할 경우 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지정절차 및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건설업체진단규칙에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개정 내용

가. 건설업면허기준중 건설업실질자본금과 건설업체의 재무구조 및 기술개발투자액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은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, 합동회계사무소,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, 기타 경영진단 전문기관으로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함.
나.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

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 건설부장관에 신청하도록 함.

- 민법 또는 타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에 기업경영연구와 경영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
- 건설산업분야의 경영에 관한 연구나 진단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실적이어야 하며
-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함.

다.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매 3년마다 갱신지정을 받도록 함.

라. 진단기관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, 진단규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취소 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진단업무를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993년 2월28일까지
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
관(참조 : 건설산업과장, 전화 : 503-
7391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

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
성명)

다. 주소 및 전화번호

자연속의 신도시 꿈이있는 미래도시